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2020.10.8. / (총 8매)		
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	팀 장	설 예 승	044-202-3051
	담당자	신 태 환	044-202-3052
		최 종 천	044-202-3058
		고 석	044-202-3061
		강 태 수	044-202-3054
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시스템팀	팀 장	장 은 섭	044-202-3160
	담당자	최 병 익	044-202-3172
		배 수 미	044-202-3162

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!

-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-
- 10월 12일 온라인,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0월 12일(온라인 10.12일~, 현장 10.19일~)부터 받는다고 밝혔다.

○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·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* 기존 복지제도**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***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이다.

* 근로소득 25% 이상 감소자, 사업소득(매출)이 25%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, '20.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

**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긴급복지(생계지원)와 중복지원 불가

***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

< 지원 기준 > (세전 기준)

·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	1,318,000	2,244,000	2,903,000	3,562,000	4,221,000	4,880,000

· 재산 기준 : 대도시 6억 원, 중소도시 3.5억 원, 농어촌 3억 원 이하

○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,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(행복e음)를 기준으로 확인하며, 재산*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(행복e음)를 통해 토지, 건축물,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,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.

- 더불어,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('20.7~9월) 소득(월 또는 평균소득)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* 신고한 근로·사업소득 대비 25%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**한다.

* '19년 월 평균소득, '19년 7~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, '20년 1~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

**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,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,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

□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('20.9.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) 단위로 신청·지급하며, 4인 이상 100만 원(1인 40만 원 / 2인 60만 원/ 3인 80만 원)을 1회 지급(계좌입금) 한다.

□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,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'신청 요일제'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.

*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·신청 가능한 요일((월요일) 1,6 (화요일) 2,7 (수요일) 3,8 (목요일) 4,9 (금요일) 5,0 (토요일) 홀수, (일요일) 짝수)을 정하여 접수

-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(<http://bokjiro.go.kr>) 또는 이동통신(모바일) 복지로(m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휴대전화(휴대폰)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세대원 포함)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*(참고 2 참조)를 제출하면 된다.
- 현장 방문 신청은, 세대주·동일세대 내 가구원·대리인(법정대리인 등)이 본인 신분증(원본)**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세대원 포함)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*(참고 2 참조)를 제출하면 된다(주말 미운영).

* (근로 소득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 등)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·임금·무급휴직·소득감소확인서
(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)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(매출)감소 신고서
(영세 노점상 등) 소득(매출)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

*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장애인증 등

-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, 소득·재산 및 소득 25% 감소 여부,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.
- 박능후 장관은 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.”라고 밝혔다.
- 더불어, “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□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·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.

- <붙임> 1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
2.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
3.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질의·응답

참고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
- (사업내용)

- (지원대상)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,
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,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

- 위기사유 :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·사업소득 25% 이상 감소
-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	1,318,000	2,244,000	2,903,000	3,562,000	4,221,000	4,880,000

- 재산기준 : 대도시 6억 원, 중소도시 3.5억 원, 농어촌 3억 원 이하

* 기초(생계급여), 긴급(생계지원)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(긴급고용 안정지원금,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) 중복 지원 불가

- (선정방식) 신청 →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
→ 지급 결정 → 지급

- (지원금액) 1인 가구 40만 원, 4인 가구 100만 원
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 이상
지급액(원)	400,000	600,000	800,000	1,000,000

- (지원방법)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(1회)

○ 집행절차(안)



참고2

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

□ 근로 소득자(상시,일용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

구분	제출서류(①~②중 택1)	발급 방법 안내
선택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	사업장, 국세청 국세청홈택스>My홈택스>지급명세서
	② [서식3] 고용·임금·무급휴직·소득감소확인서	
	+	
	㉠ 근로계약체결서 ㉡ 급여지급명세서 ㉢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	①~㉢ 중 제출 가능서류
	※'20.7~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]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'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(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)과 해당 통장의 '20.7~9월 임금내역 전체를 제출(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)	[서식3] 작성 → 사업주 발급 -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- 발급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 필수 포함 -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

□ 사업자(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)

구분	제출서류(①~④중 택1)	발급 방법 안내
선택	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·국세청홈택스 >민원증명 ·국세청홈택스 >신고 / 납부 ·국세청홈택스>My홈택스>지급명세서
	④ [서식4] 소득(매출)감소 신고서 + ㉠ 휴·폐업사실증명서 ㉡ 매출전표 ㉢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㉣ 통장 사본	[서식4] 본인 작성 · 국세청홈택스>민원증명 · 사업장별 카드사 ·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

□미등록 사업자(영세 노점상 등)

구분	제출서류	발급 방법 안내
선택	·[서식4] 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+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	[서식4] 본인작성 ·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

참고3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질의 · 응답

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?

-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'20.9.9.(수)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(동거인 포함) 기준이 원칙입니다.
- 다만,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.
- * '20.9.9일 기준 사망, 말소자, 거주 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제외되며,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
- ※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

2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?

- (원칙) 외국인·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,
-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.
-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,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·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.

※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(비자유형 F-6-3)

3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(영세노점상)도 신청 가능한지?

-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(매출)감소* 25%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[서식4]소득(매출)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,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 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

4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?

- 세전 소득입니다. 각종 국세, 지방세,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.

5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?

-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% 이상이 될 경우,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다만,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(중소도시 3.5억 원, 농촌 3억 원)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6 이의신청 방법은?

-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, 소득*, 재산(6억 원 초과 탈락자 중)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.

*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